제311회 임시회 2012. 6. 22.(금)

심사보고서

○ 「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

「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문희 의원 외 6인

나. 발의일자 : 2012년 6월 1일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6월 12일

(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"실·국·본부장, 담당관, 실·과·팀장급"을 "실·국·단·본부장, 담당관·과장급"으로 개정함. (안 제2조제2호)

3. 검토보고 요지

(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: 정헌성)

- 충청북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한 「충청북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・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 략"
- 6. 제 안 · 심 사 : 원안 가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「충청북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 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 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보조기관중 실·국·본부장, 담당관, 실·과·팀 장급"을 "보조기관 중 실·국·단·본부장, 담당관·과장급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2.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·국·본부장, 담당관,실·과·팀장급

전환·과장급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

제2조 (실장·국장·단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 등 보조 및 보좌 기관의 직급) 충청북도(이하"도"라 한다) 본청의 실장·국장·단 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·출장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.